

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98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9. 5.
-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
- 다.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안 제5조 ~ 안 제7조)
- 라. 위탁 및 대행의 구의회 동의 및 동의안(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안 제10조)
- 바. 사무처리지침과 책임의 소재, 수탁 및 대행기관의 재위탁과 재대행 금지(안 제11조 ~ 제13조)
- 사. 경비의 부담과 사용료 등 징수 및 정산, 사무편람(안 제14조 ~ 안 제17조)
- 아. 실적보고와 지도 및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와 계약의 해제(안 제18조 ~ 안 제21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기존의 민간위탁과 구분하여 공공위탁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공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책임의 소재, 구의회 동의, 지도·감독, 감사 및 성과평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 되었음.
-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대행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 “위탁”, “대행”, “수탁기관”, “대행기관”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위탁·대행해서는 안되는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7조까지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 소관부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남 보성군 조례를 예시로 들며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해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 “동의” 대신 “보고”로 갈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부서 의견을 제시함.
- 안 제9조에서는 안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계약체결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위탁·대행기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위탁·대행사무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사무 처리 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행사무 처리의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구청장에게 있고, 구청장과 대행기관 간에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와 대행사무의 차이점과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위탁에 대한 정의와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13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이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 비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에서는 위탁·대행사무의 정산과 평가 및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9조에서는 위탁·대행사무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분 취소 및 정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20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와 임원 및 직원의 인사조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위탁·대행계약의 해지 및 해제사항과 그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은 사무위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규정한 것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대행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대행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